

인천지방법원

지급명령

사 권 2021차전 103420 기타(금전)

채 권 자 최윤서 (820226-2227014)
오산시 발안로 1355, ,101동 1804호(누읍동, 이림아파트)

채 무 자 권용훈 (750519-1245212) 2021.3.2.송달, 2021.3.17.확정
인천 부평구 안남로417번길 19, 407호(청천동, 세광오피스텔)

청구취지와 원인 별지와 같다.

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.
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2021. 2. 10.

사법보좌관 유해상



정본입니다.
(채무자 권용훈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.)

지급명령 확정 당시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채 권 자 최윤서
오산시 발안로 1355, ,101동 1804호(누읍동, 이림아파트)

채 무 자 권용훈
인천 부평구 안남로417번길 19, 407호(청천동, 세광오피스텔)
[송달장소]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96길 15-12 (망우동)

2021. 3. 22.

법원주사보 신수복



- ※ 1. 채무자가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
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.

열람용

청 구 취 지

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

1. 금 4,100,000 원
※ 독촉절차 비용 63,000 원
(내역 : 송달료 61,200 원, 인지액 1,800 원)

청 구 원 인

1. 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상시 잘 아는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꼭 갚겠다고 하여, 보험 약정대출 및 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총 금11,000,000원을 같이 일하는 황연희 님의 통장으로 이체해달라고하여, 황연희 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.
2. 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11,000,000원을 빌려간 이후 2020년 02월 08일까지 입금된 금6,900,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금4,100,000원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주기로 하였으나,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.
3.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4,100,000원의 지급을 수차례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, 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.